## 제303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서 면 질 의 답 변 서

2011. 9.



## 순 서

### 2011. 9. 20(화) 문화재청 국정감사 시

이	철	우	의원	•••••••••••••••••••••••••••••••••••••••	1
조	윤	선	의원		17
전	병	헌	의원	•••••••••••••••••••••••••••••••••••••••	23
강	숭	규	의원	•••••••••••••••••••••••••••••••••••••••	27
심	재	철	의원	•••••••••••••••••••••••••••••••••••••••	31
안	경	률	의원	•••••••••••••••••••••••••••••••••••••••	39
김	부	겸	의원	•••••••••••••••••••••••••••••••••••••••	45
김	재	윤	의원		51
김	창	수	의원		57
<b>o</b> ]	병	석	의원	•••••	67

### 〈목 차〉

<b>&lt;0 </b> 3	절우 의원〉 1
1. 창	·덕궁의 수십억짜리 관리사무소, 내병조
1)	지난 1999년 국민의 세금을 들여 창덕궁 외행각 복원공사의 일부로 복원한 창덕궁
	내병조를 2003년부터 창덕궁관리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내병조를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은?
2. 7]	동보수단 확대하고 처우 개선해야
1)	문화재청에서는 고건물이나 시설물에 작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복구해 2차적인
	문화재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동보수단을 운영하고 있음. 올 여름 수해 때
	기동보수단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2)	현재 기동보수단 인원이 40명인데 비정규직이 22명이나 됨.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규직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
3)	현재 기동보수단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4대궁, 종묘 등)에만 투입되고
	있음. 이를 확대하면 피해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방의 문화재와 사찰
	문화재에도 확대할 것을 요청함 4
3. 독	도 현상변경 불허
1)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5
2)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독도에 무엇이든 하려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에서의 결정들이 올바르게 내려지고 있다고 보는가? 5
3)	2008년 이전에는 독도에 대한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2004년 단 한건만 불허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최근까지 무려 11건이나 불허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왜
	이렇게 불허 건수가 많아졌나? 5
4)	
	두고 지켜보라니 국민정서에 맞는 일인가? 6
5)	故 최종덕씨 공덕비와 관련, 최근에 행정기관이 현상변경 불허처분을 이유로 철거를
	요청하자 기념사업회와 유족들이 비석을 독도 앞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가? 6
6)	경북지방경찰청이 신청한 독도경비대 순직자 위령비, 국기게양대 설치도 불허했는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영토 수호 활동을 숭고히 생각하는 정신이 전혀 없나? 6
7)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에 의한 시설물들이 죄다 문화재위원회에서 퇴짜를 맞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정부가 시늉만 하고 진짜로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 7

8) 또 최근에는 경북 울릉군이 독도 탐방객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신청도 무산시켰다. 울릉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국비 60억원을 확보해두고 있었
는데 이제 반납해야 할 처지다. 어째서 독도의 활용을 제지하는 것인가? 7
4. 의친왕궁 VS 일본군관사
1) 관훈동 196번지 일대에 있는 의친왕궁(사동궁)은 왜 멸실되었는가? 한 외국인의
저자의 책에 의하면 이 사동궁의 일부가 1955년부터 '도원'이라는 요정으로 쓰이다가
지난 2005년 이마저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인가? (경위 상세 파악 보고할 것) 표지석 하나 없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
문화재 행정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8
2) SH공사의 상암2지구 개발 중 발견된 일본군 관사를 아파트 단지에 이축·복원하는
것이 적절한 결정이었는가, 또 이 아파트 단지 바로 맞은편에는 일본인 학교가
들어섰는데, 이는 이미 결정돼 있던 것인가? 9
3) 마포구청이 지난해 12월 이 관사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를 심의하지 않는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의친왕궁은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주차장 만들고, 일제 장교들이 쓴 병참기지는 복원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문화재 행정의 현실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군 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9
5. 4대궁, 종묘 경비·방재시스템
1) 창덕궁 CCTV는 9월 18일 154대 중 21건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화재방재시스템은 9월에
창덕궁 16건, 종묘 6건의 고장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조치계획은 무엇인가? 10
2) 4대궁과 종묘 상황실 방재원의 통제 및 시스템 관리 역량부족에 대한 대책은? 10
3) 4대궁과 종묘를 모두 (주)현대정보기술에 맡긴 이유가 무엇이며, 입찰관계에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10
〈조윤선 의원〉 17
1. 문화재복원과정, 산교육자료이자 관광자원으로 삼아야
1) 숭례문 복구현장이 일반에 공개되는데 복원현장 관람은 '가설 덧집 내 관람실에서'
조망 하는 것만 가능함. 관람객 동선이 어디인지 따로 표시도 없고 철제 가설 덧집 2층의
펜스앞에 서서 해설사의 설명을 들음. 펜스 뒤쪽은 엉성한 사진 판넬이 전부임 19
2) 전통기법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던 숭례문 복원현장에 굴삭기 브레이커가 보이고
대장장이는 전통복장을 입지 않고 작업함. 전통기법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약속은
1회적인 이벤트였나? 사실이 어떻든 현장을 처음 찾은 관람객에게 혼란을 주는
장면임

3) 숭례문 복원현장의 단색 페인트만 칠해진 가림막이 단절된 공간이자 시민과의 소통이
없는 닫힌 공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공사가 끝날 때까지 흉물스런
가림막으로 차단하는 관행을 이제는 바꾸고 복원공사 현장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복원현장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19
2. 독도의 실효적 지배 평화적·예술적 방법으로
1) 향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
입니까? 20
2)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방안으로 경찰력이나, 군대를 상주시키자는 의견에서부터 해양
연구소를 설립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예술적인 방법으로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표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는 데 문화재청입장은? 20
3. 문화재 하드웨어 활용 적극 추진해야
1) 프로그램 위주의 문화재 활용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살리는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0
2) 문화유산 활용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여 지역 단체장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원 예산 확충, 전문가의 양성 및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 등을
얻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21
4.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민간역할 강화해야
1)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민간 기구, 예를 들면 가칭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설립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22
3) 본질적으로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르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존 민간 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2
〈전병헌 의원〉 23
1. 문화재 미검인업체 관리 부실, 음성적 거래 우려
1) 연락두절로 인한 미검인 업체에 대한 조치 미흡 25
2) 지자체 검인시기인 $1\sim2$ 월 사이 폐업을 하면 지난 $1$ 년간의 거래내역에 대한 검인을
안함. 이는 음성적 거래 후 폐업하여 검인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큼
폐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인기간이 아니라도 거래내역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임 25
2. 지난해 천연기념물 죽음 전년 대비 6배 증가
1) 지난해 천연기념물의 죽음이 전년 대비 6배 증가했음에도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26

〈강승규 의원〉	27
1.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1)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으로 나타니	<b>구고</b>
있음. 집행률 제고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임	29
〈심재철 의원〉	31
1. 문화재청 비위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하여	33
2. 발굴기관에 방치된 국가유물들 76,661점, 국가관리 강화해야	
1) 유물정리 및 미발간 보고서 완간 후 보관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귀속조치된 유들	물을
조속히 인계토록 하여 국가귀속문화재의 장기보유에 따른 훼손 및 도난 방지대청	
수립해야 할 것임	34
2) 유물의 미인수로 인하여 조사기관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수장고 확장	등
장기적인 유물 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	겁무
협조를 통해 국가귀속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함	34
3)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유물관리규정 제정 및 관리 일원화 등을 통하여 체계적 유	유물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며 미귀속 유물 중 국가귀속 대상 유물은 조속	속히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토록 해야 함	34
3. 문화재청, 교육 수강료 7천여만 원은 지출증거서류도 남기지 않아	35
4. 국외문화재 환수 대부분(68.5%) 기증에 의존, 정부간 협상에 의한 환수는 23.7%에 불	·과
1) 아직까지 문화재청이 불법부당 반출 문화재에 대한 규명과 환수대상 문화지	대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목록화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음.	속히
환수대상 문화재를 목록화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재 환수를 위	위 해
노력할 것	36
5. 파주 반환미군기지(캠프 게리오웬) 환경오염 정화사업 중 고려~조선시대 유물빌	<u> </u> 년!
공사 강행으로 문화재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1) 성급한 판단으로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것	36
6. 전국 항만, 공항 등 문화재 유출 적발방지 위한 감정위원 배치기준도 없이 부족	적절
배치, 감정수당 부당 수령 등 대책 필요	
1)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 감정실	실적
등을 반영하는 배치기준을 만들어 업무실적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	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37
2) 감정업무 소홀로 소중한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감정유	위원
전체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대책마련해야?	37

<b>(만</b> :	성들 의원〉
1. 궁	능원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노력 필요!
1)	관광공사 및 관광회사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궁
	능원 관광자원화가 시급하며,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 등을 감안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 필요
2. 부	·실한 문화재 해외반출 방지체계, 전면개선 시급!
	감사원 감사에서 상근 감정위원 1인이 감정하고 2인이 감정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_,	사례가 적발되었음.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 말고, 숨겨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체 감사 실시 등 철저한 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2)	'''''''''''''''''''''''''''''''''''''
_,	반출금지문화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청장의 견해는? 42
3)	전문분야별 연계강화방안, 비전문분야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٥,	청장의 견해는? ····································
4)	2008년 비상근 감정관실 부실운영 문제가 지적된 바 있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문제와 더불어 공직기강의 문제라고 생각
	됨.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힐 것
5)	비상근 감정위원은 출근 시에만 수당(10~11만원)을 지급하게 되므로 인력풀을 여유
ŕ	있게 위촉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청장의 견해는?
3. 최	근 3년간 문화재청 소속기관 연구용역 71%가 수의계약
	최소한의 입찰조건만을 넣어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청장의 의견은? 43
〈김!	쿠겸 <b>의원〉 ············· 45</b>
	·국의 문화공정 야욕, 아리랑 빼앗기나 ········ 47
	동성당 구 주교관, 문화재보다 더 가치 있는 비지정 문화재
	1977년 2월 26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명동성당 본당과 구 주교관을 국가사적으로
-/	의결하였으나 1977년 11월 22일 관보에서 구 주교관이 누락된 이유를 문화재청에
	문의하니 당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지정하기로 의결된 문화재가 실제 지정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는가? 48
2)	구 주교관은 향후 재개발 과정에서 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사적 지정하여
-/	보존대책을 세운 다음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임.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 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그 필요성을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냈음. 문화재청장은 구 주교관의 사적으로써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적 지정을 추진할 것인지? 48

〈김재윤 의원〉 51
1. 문화재청, 상부의 공식요청 없이 만월대 발굴 중단
1) 단지 5·24조치에 따라 발굴조사를 중단한 것은 북한 내 우리 문화재 실태 및 보존이
마스터플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라 생각함. 큰 틀에서 북한 내
우리 문화재 실태와 보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53
2. 우리도 반환해야 할 외국의 귀중한 문화재가 있다!
1)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타니 컬렉션 유물을 돌려 달라고 할 때에 대비한
문화재청의 대응방안은? 54
3.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전문가 양성기관인 전통문화대학교 출신, 문화재청에는 고작 2명
1) 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 졸업생을 문화재 행정현장에
투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국가 인력 운용의 관점을 봤을 때,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54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문화재관련 기관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 지를 파악하고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 생각은? 54
〈김창수 의원〉 57
1. 고발은 지자체한테 떠넘기고, 후속조치는 나 몰라라.
1) 작년 국정감사때 지적받은 왕흥사지 등 문화재 훼손에 대한 고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59
2)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감에서 지적하면 고발하겠다 해
놓고, 증거도 없이 고발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종결하면 그만입니까? 59
3) 불기소 처분이 떨어졌으면 왜 그 처분이 나왔는지 사유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건
받으셨습니까? 부여군청이 고발했기 때문에 관할관청인 문화재청은 후속조치는
나몰라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 59
4) 문화재 훼손은 후손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관할관청인 문화재청이 이러한 죄에
엄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문화재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 건을 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허술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59
2. 외암 민속마을 고택 경매, 문제점은 없는가?
1) 아산 민속마을의 상징적 건물인 '건재고택'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매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감찰댁'은 2009년부터 사랑방 증축을 위해 공사 중인데 불법적인
원형변경이라는 주장이 있음.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는 없는
것인지? 60

2)	'감잘댁'의 경우, 지난 2007년에 소유 은행측이 사랑방 증축을 위한 증거를 잦으려
	간이발굴을 했다가 결국 못찾았는데, 2008년 말에 증축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
	입니까? 60
3)	위와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이러한
	고택 등을 국가가 나서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
3. 아	직 특성화 안된 문화유산 특성화 대학
1)	전통문화 전문인 양성을 위한 학교운영 정책이 퇴색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0  <b>5</b>	병석 의원〉 67
	병석 <b>의원〉 67</b> 화재 보호는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 -조직·인력 확충 통한 예방대책 시급-
1. 문	- · · · -
1. 문	- · · · · · · · · · · · · · · · · · · ·
1. 문	화재 보호는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 -조직·인력 확충 통한 예방대책 시급- 문화재청 소속으로 도난·도굴 단속업무 담당 인원은 2명뿐이고, 도난방지설비 구축률,
1. 문 1)	화재 보호는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 -조직·인력 확충 통한 예방대책 시급- 문화재청 소속으로 도난·도굴 단속업무 담당 인원은 2명뿐이고, 도난방지설비 구축률,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지켜보고 있으면 도대체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1. 문 1)	화재 보호는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 -조직·인력 확충 통한 예방대책 시급- 문화재청 소속으로 도난·도굴 단속업무 담당 인원은 2명뿐이고, 도난방지설비 구축률,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지켜보고 있으면 도대체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청장의 견해는?
1. 문 1)	화재 보호는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 -조직·인력 확충 통한 예방대책 시급- 문화재청 소속으로 도난·도굴 단속업무 담당 인원은 2명뿐이고, 도난방지설비 구축률,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지켜보고 있으면 도대체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청장의 견해는?
1. 문 1) 2)	화재 보호는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 -조직·인력 확충 통한 예방대책 시급- 문화재청 소속으로 도난·도굴 단속업무 담당 인원은 2명뿐이고, 도난방지설비 구축률,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지켜보고 있으면 도대체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청장의 견해는?
1. 문 1) 2)	화재 보호는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 -조직·인력 확충 통한 예방대책 시급- 문화재청 소속으로 도난·도굴 단속업무 담당 인원은 2명뿐이고, 도난방지설비 구축률,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지켜보고 있으면 도대체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청장의 견해는?
1. 문 1) 2)	화재 보호는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 -조직·인력 확충 통한 예방대책 시급- 문화재청 소속으로 도난·도굴 단속업무 담당 인원은 2명뿐이고, 도난방지설비 구축률,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지켜보고 있으면 도대체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청장의 견해는?
1. 문 1) 2)	화재 보호는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 -조직·인력 확충 통한 예방대책 시급- 문화재청 소속으로 도난·도굴 단속업무 담당 인원은 2명뿐이고, 도난방지설비 구축률,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지켜보고 있으면 도대체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청장의 견해는?

# 이 철 우 의원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7

### 1. 창덕궁의 수십억원짜리 관리사무소, 내병조

- 1) 지난 1999년 국민의 세금을 들여 창덕궁 외행각 복원공사의 일부로 복원한 창덕궁 내병조를 2003년부터 창덕궁관리사무소로 사용 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내병조를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은?
- 창덕궁의 관리 등을 위하여 창덕궁 내에 관리사무소를 두어야 하나 궁궐 내에 별도 건물 건립 시 궁의 경관저해와 궁궐 배치양식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사무소 건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내병조 건물을 문화재위원회 심의(2005년)를 거쳐 외부 변형 없이 내부에 최소한의 설비만 설치하여 부득이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 지장을 우려하여 일반 관람객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 향후 창덕궁관리사무소를 별도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이만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3

### 2. 기동보수단 확대하고 처우 개선해야

- 1) 문화재청에서는 고건물이나 시설물에 작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복구해 2차적인 문화재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동 보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 여름 수해 때 기동보수단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 서울·경기 지역 일원의 집중호우로 인한 궁·능 피해는 경복궁 자경전 담장 붕괴 등 총 26건으로, 피해가 경미한 사항은 자체 조치토록하고 관람객의 안전사고, 문화재 경관 저해 등이 우려되는 종묘 영녕전 주변 담장 등 7건에 대하여 즉시 출동하여 긴급하게 보수를 완료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문화재 경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기동보수단에서 복구한 피해 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능별	피해현황	복구내용
경복궁	자경전 북측 담장 1.5m 붕괴	자경전 북측담장 1.5m 보수
창덕궁	의풍각 둘레담장 5m 붕괴	의풍각 둘레담장 27m 보수
종 묘	영녕전 서문 북쪽 담장 7m 붕괴	영녕전 서문 북쪽담장 27m 보수
홍유릉	영원 뒤 경사면 40㎡ 유실	영원 뒤 경사면 70㎡ 보수
उंगें	회인원 뒤 경사면 100㎡ 유실	회인원 뒤 경사면 150㎡ 보수
<b>코즈사</b> 크	공릉 봉분 40㎡ 붕괴	공릉 봉분 688㎡ 보수
파주삼릉	소하천 석축 170m 유실	소하천 석축 200m 보수
계	총 7건	

- 2) 현재 기동보수단 인원이 40명인데 문화재수리기능자가 26명, 장비조종 4명, 운전 4명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가 34명이다. 그런데 40명중 정규직이 18명밖에 되질 않고 비정규직이 22명이나 된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정규직은 문화재청 직원으로 공무원 직급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일당으로 5~6만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 정규직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신규채용도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젊은이들이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규직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현재 비정규직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력에 대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3) 기동보수단은 수리복구에 예산신청, 심사, 승인, 발주, 공사 등의 지루한 행정처리를 거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현지 기동 보수단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4대궁, 종묘 등)에만 투입되고 있다. 이를 확대하면 피해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방의 문화재와 사찰문화재에도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 우리 청은 지방의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존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 상시관리사업"을 통하여 문화재훼손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 방식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동보수반을 직접 운영하거나 문화재 관련 민간단체를 통한 위탁 방식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에 5개 시·도 1,260 백만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언론, 문화재 관리자 및 소유자 등으로 부터 호응이 좋아 2011년에는 8개 시·도 2,260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도 11개 시·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6

### 3. 독도 현상변경 불허

- 1)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독도의 영토주권 입증은 국토를 주권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독도'를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재와 같이 천연 기념물로 지정·관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2)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독도에 무엇이든 하려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에서의 결정들이 올바르게 내려지고 있다고 보는가?
  -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사안에 따라 문화재 보존을 위해 신중하게 심의되고 있습니다.
- 3) 2008년 이전에는 독도에 대한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2004년 단 한건만 불허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최근까지 무려 11건 이나 불허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왜 이렇게 불허 건수가 많아졌나?
- 2007년 이전에는 관측장비·통신장비 설치 등 주로 경미한 사항이 허가되었고,
   2008년 이후 불허한 11건은 표지석 설치, 위령비 설치 등 대부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독도의 협소한 공간과 연약한 지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천연보호구역의 경관에 어울리지 않아 불허하였습니다.

- 4)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마당에 독도를 가만히 두고 지켜보라니 국민정서에 맞는 일인가?
  -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한 시설물 설치 등 이용 강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만 독도가 지니고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수용한계를 고려한 시설물 설치와 이용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 청은 독도 내 시설물 설치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조화될 수 있도록 처리해나가겠습니다.
- 5) 2008년에는 최초로 독도에서 삶을 일군 故 최종덕씨의 따님과 기념사업회가 독도에 최종덕 공덕비를 설치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도 국토해양부도 이에 찬성했는데, 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관계기관 협의절차가 안됐다면서 퇴짜를 놓았다. 그러자 그분들이 작년 6월에 독도 서도의 옛 문어건조장터에 설치도 하지 않은 채로 비석을 놓아두었는데, 최근에 행정기관이 현상변경불허처분을 이유로 철거를 요청하자 기념사업회와 유족들이 비석을 독도 앞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어떤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가?
- o 독도에서 최초로 삶을 일군 故최종덕씨의 공적을 기려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다만, 2008년 당시 신청된 비석의 규모(1.75\*2.1\*1.3m)가 매우 컸기 때문에 독도 천연 보호구역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였으며, 작년 6월에 故최종덕 기념 사업회에서 서도에 세워놓았던 비석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설치 당사자로 하여금 자진철거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 참고로 국토해양부의 국유재산 사용 승인 허가 등 관련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o 향후 독도의 협소한 공간과 지형 등을 고려, 적정위치에 재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6) 재작년에는 경북지방경찰청이 신청한 독도경비대 순직자 위령비를 설치하겠다는 요청도 불허하고 작년에는 국기게양대 설치도 불허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영토 수호 활동을 숭고히 생각하는 정신이 전혀 없나?

- 영토수호활동의 숭고한 정신은 선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독도의 시설물 설치는 화산섬인 독도의 연약한 지반과 협소한 공간 및 문화재보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 경북지방경찰청이 신청한 독도 경비대 순직자 위령비 설치신청 건은 적정위치에 통합 위령비 설치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울릉군에서 신청한 국기게양대 설치 건은 망양대 주변의 국기게양대 설치는 허가하였고, 경북도기, 울릉군기는 주민숙소 옆에 이미 설치되어 있어 협소한 지역 내에 많은 깃대와 깃발을 설치하는 것은 경관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불허한 바 있습니다.
- 7) 이명박 정부는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까지 발표했었다. 그런데 죄다 문화재위원회에서 퇴짜를 맞고 있다. 2009년에는 독도방파제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를 또 퇴짜를 놓았다. 정부추진 영유권공고화 사업인데도 문화재청이 퇴짜를 놓으면서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예산집행이 안돼서 아직도 설치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정부가 시늉만 하고 진짜로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 ㅇ 독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지배 강화를 위한 방파제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2009년 6월 독도 방파제 및 기타시설 설치를 전제로 한 해저지반 조사를 불허하였으나 2010년 3월 재심의를 거쳐 허가한 바 있습니다.
  - 현재 방파제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가 진행 중('10.12~'11.12)에 있으며, 국감 시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11.9.28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시 국토해양부에서 방파제 건립 계획 설명회를 개최, 방파제 설치의 당위성, 경관과의 조화성 등을 설명하는 등 관련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조화될 수 있도록 처리 할 예정입니다.
  - 또한 설계 과정에도 우리 청 문화재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 8) 또 최근에는 경북 울릉군이 독도 탐방객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신청도 무산시켰다. 울릉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국비 60억원을 확보해두고 있었는데 이제 반납해야 할 처지다. 어째서 독도의 활용을 제지하는 것인가?
  - 독도의 관리주체로서 울릉군이 독도에 현장관리소를 설치하는 것은 독도의 문화재 관리나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동도 내 현장관리소 설치는 문화재보존과 조화 및 독도의 협소한 공간과 연약한 지반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며, 동건과 관련하여 '11.9.29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11.10월 중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입지 등 건립의 타당성을 조사함과 아울러 독도 방파제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독도 관리소 기능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2009년 6월 문화재위원회에서 주민숙소 확장공사 시 현장관리사무소 기능을 반영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2009년 11월 울릉군에서 주민숙소를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으로 변경 신청하여 허가한 바 있습니다.

※ 당초 3층(9.6m), 118.92㎡ → 변경 4층(11.86m), 373.14㎡ / '11.6월 완공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곽창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4, 4882

### 4. 의친왕궁 VS 일본군관사

- 1) 종로에는 과거 궁이 여러개 있었는데 지금 사라진 궁은 어떤 궁들이 있는가? 관훈동 196번지 일대에 있는 의친왕궁(사동궁)은 고종의다섯째 아들로 황족중 유일하게 독립운동을 했을 정도로 강직한인물이었던 의친왕이 살던 곳이었는데 왜 멸실되었는가? 한외국인의 저자의 책에 의하면 이 사동궁의 일부가 1955년부터 '도원'이라는 요정으로 쓰이다가 지난 2005년 이마저 포크레인으로밀어버리고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인가? (경위 상세 파악 보고할 것) 표지석 하나 없이 잊혀져 가고있는데 문화재 행정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o 종로 인근에는 수진궁, 죽동궁, 사동궁 등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모두 멸실되고 남아있지 않으며, 수진궁과 죽동궁은 표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동궁에는 표석이 없는 실정입니다.
- 사동궁(의친왕궁 터)의 역사적인 기록조사를 충실히 하고 온전한 역사적 의미를 기념할 수 있도록 표석설치 등에 관하여 서울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서울시 표석설치자문위원회('11.9.30) 심의 후 조치예정>

- ㅇ '사동궁' 멸실 관련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및 건물 매입(종로구청): '04. 8~'05. 5
    - · 매입 당시 당해 부지 내에는 1950년대 전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옥 3채와 1970년대 이후 증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옥 2채가 있었음. 증축된 한옥은 한옥 본연의 목조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건립된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한옥 3채의 경우는 목조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증축, 개축, 도로 개설 등으로 일부 변형, 훼손된 상태였음
  - 공영주차장 조성 : '05. 5~'06. 2
    - 의친왕 이강 공의 집터 내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지반 훼손 없이 1층 평면식 주차장으로 조성 · 운영하고 있음
    - ·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취득당시 상대적으로 건축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건축물 1동에 대해서는 해당번지 내에서 이전 개·보수하여 현재 인사동 관광홍보관(134.1㎡)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그 이외 건축물은 동 주차장 조성 시에 철거되었음<관련 내용 붙임 참조>
- 2) SH공사가 상암2지구 개발 중 일본군 관사를 발견하여 문화재청에 보고하여, 문화재청에서는 '06년 역사적 가치가 있어 문화재 등록 추진할테니 이축·복원하라는 지시를 내렸음. 일본군 관사 기지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병참기지로 사용하던 것인데 이것을 아파트 단지에 이축·복원하는 것이 적절한 결정이었는가, 또 이 아파트 단지 바로 맞은편에는 일본인 학교가 들어섰는데, 이는 이미 결정돼 있던 것인가?
- 일본군 관사 이축·복원은 SH공사에서 관계전문가의 조사 자문을 받아('08~'10) 이축하였으며, 일본인 학교 신축 건은 일본군관사 이축·복원 결정('06) 시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3) 마포구청이 지난해 12월 이 관사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를 심의하지 않는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의친왕궁은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주차장 만들고, 일제 장교들이 쓴 병참기지는 복원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문화재 행정의 현실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군 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일본군 관사에 대한 학술적, 문화적, 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문화재 등록 추진 등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의친왕궁 등은 정비 당시 이미 원형이 일부 훼손·변형(붙임4 참조)되어 지정되지 못한 비지정문화재로서, 보존·관리상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로 멸실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표석이 없는 사동궁의 경우에는 의친왕궁 터를 기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며, 조속히 표석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박정상/이재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4777

### 5. 4대궁. 종묘 경비·방재시스템

- 1) 창덕궁 CCTV는 9월 18일 154대 중 21건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화재방재시스템은 9월에 창덕궁 16건, 종묘 6건의 고장이 발생하 였는데 앞으로 조치계획은 무엇인가?
- 4대궁과 종묘의 화재방재시스템은 작동 불량 불꽃감지기 등을 즉시 복구 조치하였으며 CCTV는 확인감사 전까지 장애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수시점검 등을 통해 장애가 발생한 경비시스템은 24시간 내에 조치토록 예비 장비 확보, 운영자 교육 강화 등을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창경궁의 보완 시스템이 완료·안정화되면 나머지 궁 및 종묘에도 보완하여 안정적인 경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관련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연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2) 4대궁과 종묘 상황실 방재원의 통제 및 시스템 관리 역량부족에 대한 대책은?

- 4대궁과 종묘의 소방설비유지관리 방재원은 각 궁관리소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으로서 통제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 앞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을 통해 주기적인 시설 운영 교육 및 상황대처 능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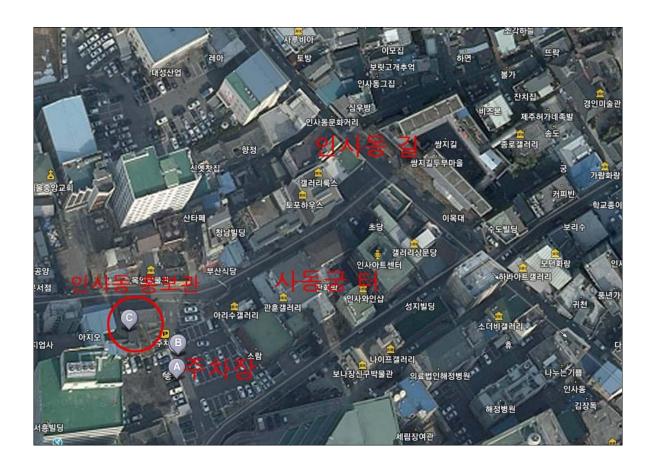
### 3) 4대궁과 종묘를 모두 (주)현대정보기술에 맡긴 이유가 무엇이며, 입찰관계에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을 4대궁과 종묘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일괄 발주하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통상적인 입찰절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붙임 1] 사동궁 터·죽동궁 터·수진궁 터



### [붙임 2] 사동궁 터 현황 항공사진



[붙임 3] 이건한 인사동 관광홍보관 현황



### [붙임 4] 주차장 조성관련 협의내용(서울시, 종로구청 간)

	관인생	da l		
	서울특	벌시		
정보통신망			110	자채심사
3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www 건축지도과 과장 : 길기식 1		전화: (02)3707 덤남자: 이기본		): (02) 3707-8369 L metro, sensil, kr
문서번호 건지58551-1616	선 생	1 532	지지	
시행일자 2001,04.23. (3년	D 전 일자	2001, 04, 23,	半子	보장
공개여부 공개	시간	09:56	전 전 전 1	7/3
경유	수 번호	2399	All	
받음 종로구참장	처리과		공 "	918
	담당자		63	
잔조. 교통행정과장			41.0	1.07
	심사자		심시	
제 목 인사동 공영주차장 1. 교행91110-706(20			시 💉	31946924
2. 위와 관련 귀구			공연주?	사 거린은 9
	THI THIE	00 40 11-51-1	001	0 0 10 12 1
부지매입 혐의에 대하여				
3. 동 지역을 포함	하여 인사동 지	구단위계획	용역을 수	행중인 시정기
연구원에 의견을 조회한 결	과 변청과 같이	회시되어 봄	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비
the same of the sa	The state of the s			
니다.				

### 서울특별시장

전결 건축지도과장 길기석

### 견지동 85-18번지 매입 및 주차장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

### 1.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서울의 대표적 문화명소인 인사동을 난개발과 이질용도 잠식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 현재 수립중인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은 '작은 가게와 한옥 살리기', '골목 지키기와 문화거리 가꾸기', '전통문화업종 살리기'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 부지의 장소적 가치

인사동 서측의 대규모 필지에 속하는 당해부지는 조계사와 우정국 등 서측 지역에서 인사동으로 진입하는 주요 접근로상에 위치하고 있고, 당해부지 (견지동 85-18외 1필지)를 포함한 견지동82, 관훈동192번지 일대는 의친왕이강(李堈)공의 집터로 역사적 의미를 지나고 있음.(그림1 참조)

### 3. 부지내 건축물 현황 및 한옥의 상태

당해부지내에는 1950년대 전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옥 3채와 1970년대 이후 증축된 한옥 1채와 양옥 2채 등이 위치하고 있음, 증축된 한옥은 한옥 본연의 목조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건립된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한옥 3채의 경우는 목조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증축, 개축,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 일부 변형, 훼손된 상태임. (그림2, 그림3 참조)

### 4. 인사동 지역내 공영주차장의 필요성

인사동 지역이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보행활동이 활발한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인사동 지역은 가능한 대중교통과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및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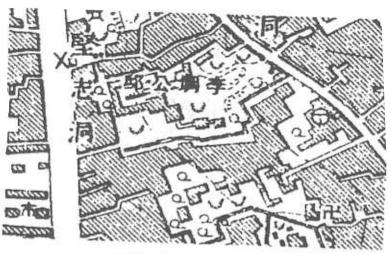
#### 5. 당해부지에 대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구상

현재 수립중인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안)은 대규모 필지들의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당해부지 역시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해부지가 갖는 역사적, 위치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사동 지역에 긴요한 공공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유도하기 위한 방안(공공의 매입 등)을 검토하고 있음.

#### 6. 종합 검토의견

당해부지를 종로구에서 매입하여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 수립중인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다만, 매입후 부지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한 뒤 부지전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보전가치가 있는 한옥(1960년대 이전 건축 한옥)을 일부 존치시켜 개보수한 뒤 공공용도(주차장 관리사무소, 인사동 관광안내센터, 기타 문화시설등)로 활용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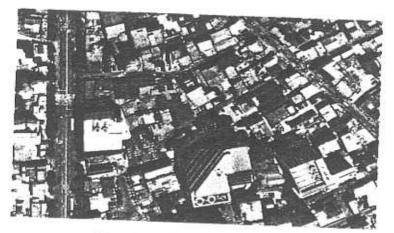




[그림1] 1921년 지도



[그림2]1962년 항공사진



[그림3]1999년 항공사진

# 조 윤 선 의원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8

- 1. 문화재복원과정. 산교육자료이자 관광자원으로 삼아야
  - 1) 숭례문 복구현장이 일반에 공개되는데 복원현장 관람은 '가설 덧집 내 관람실에서' 조망 하는 것만 가능함. 관람객 동선이 어디인지 따로 표시도 없고 철제 가설 덧집 2층의 펜스앞에 서서 해설사의 설명을 들음. 펜스 뒤쪽은 엉성한 사진 판넬이 전부임
  - 우리 청은 숭례문 복구현장을 '08. 8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전통기법 시연, 홍보 동영상 관람 등 대국민 공개관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숭례문 복구현장은 본격적인 복원공사 진행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새로운 관람 조망권 확보 및 동선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만, 개선이 가능한 5층 관람실의 안내 판넬을 재정비하고, 관람 동선을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홍예 및 원래 지반)에서 확대하겠습니다.
  - 2) 전통기법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던 숭례문 복원현장에 굴삭기 브레이커가 보이고 대장장이는 전통복장을 입지 않고 작업함. 전통기법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약속은 1회적인 이벤트였나? 사실이 어떻든 현장을 처음 찾은 관람객에게 혼란을 주는 장면임.
    - 숭례문은 숭례문 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전통기법으로 복구하고 있으며, 석공사·목공사 등 재료 자체의 질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전통도구를 사용하여 전통기법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반이나 중량의 부재 이동 등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 보고('10.3) 및 숭례문 장비사용 기준을 마련('11.2)하여 현대적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복장은 전통기법이 적용되는 석공사, 목공사 등에 한하여 착용하고 있으며, 운반・ 비계설치 등 현대적 작업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통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장간 작업자 복장은 전통복장을 착용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 3) 숭례문 복원현장의 단색 페인트만 칠해진 가림막이 단절된 공간이자 시민과의 소통이 없는 닫힌 공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공사가 끝날 때까지 흉물스런 가림막으로 차단하는 관행을 이제는 바꾸고 복원공사 현장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복원현장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 숭례문 가림막 이미지는 숭례문 공사현장이 아픈 상처를 간직한 화재 복구현장으로 그 외관을 소박하게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하며, 국보 1호 숭례문의 상징성과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가림막 외부 설치물 등의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 아울러 숭례문 복구현장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현장이면서 열린 공간이 되도록 관광상품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6

- 2. 독도의 실효적 지배 평화적·예술적 방법으로..
  - 1) 향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은 국무총리실 소관 「독도 영토관리대책단」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방안으로 경찰력이나, 군대를 상주시키자는 의견에서부터 해양연구소를 설립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예술적인 방법으로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표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문화재청입장은?
    -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예술적인 접근방법은 경찰력, 군대 등 물리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평화적인 진일보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예술적 접근방법은 깊이있는 성찰과 국·내외 관계전문가 자문 및 협의 등을 거쳐 실현가능한 방법을 고려,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 3. 문화재 하드웨어 활용 적극 추진해야
  - 1) 프로그램 위주의 문화재 활용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살리는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문화재청은 직접 관리하는 국유문화재인 4대궁과 종묘 활용을 통해 전국 문화유적 활용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궁궐은 고궁음악듣기, 다례체험을 비롯한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외에 최근에 경복궁 장고 내 콘텐츠를 재정비하여 개방 하였으며, 경회루 전각 자체를 무대로 활용한 공연도 시범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덕수궁 석조전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하여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활용하고, 창덕궁 대조전 등 전각개방을 확대하는 등 하드웨어의 활용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수하여 개관한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과 마찬가지로, 각급 자치단체 혹은 민간이 간이역, 구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최근에 울릉도 이영관가옥(등록문화재)를 복원하여 일반에 개방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관련 국내외 사례를 정리하여 보급하는 등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의 자발적 활용을 육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2) 문화유산 활용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여 지역 단체장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원 예산 확충, 전문가의 양성 및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 등을 얻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 문화유산은 미래가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입니다. 기존에 추진해온 원칙·기준·가이드라인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지역 우수활용 프로그램 발굴·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궁궐 만들기의 일환으로 개발된 '창덕궁 달빛기행'과 같은 대표프로그램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역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에서 추진되는 '생생문화재'에 대한 지원도 중점 육성방식으로 보완·개선하여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재생사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이 이를 벤치마킹하도록 유도하고, 문화재 활용 활성화 중장기계획수립 등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국외문화재팀
담 당 자	조동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3186

### 4.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민간역할 강화해야

1)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민간 기구, 예를 들면 가칭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치적·외교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국외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된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외국 개인소유 문화재에 대한 기증 유도, 경매를 통한 국외문화재 구입,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국외문화재의 현지 활용 등 다각적인 환수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의원님과 민주당 정장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설립 관련 법률안 2건이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 문화재청은 국회 차원의 노력에 부응하여, 동 재단의 운영 계획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보다 많은 우리 문화재를 환수・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설립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 기획재정부 의견은 기본적으로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별도의 민간 기관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과 민간단체(문화유산국민신탁, 한국문화재 보호재단)를 활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 3) 본질적으로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르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존 민간 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기존 민간 재단은 국외문화재 환수・활용과 관계없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별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문화재 환수・활용기능만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전문 민간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재 환수・활용을 추진 하는 것이, 예산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보다 제고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국외소재 우리문화재를 환수・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 병 헌 의원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 1. 문화재 미검인업체 관리 부실, 음성적 거래 우려

- 1) 연락두절로 인한 미검인 업체에 대한 조치 미흡
- 도난·도굴된 문화재의 불법유통 예방을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을 '07.7월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였으며, 문화재의 매매·교환 등 거래내용을 기록한 문화재 매입(매도)대장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 받도록 하였습니다.
- 문화재 매매장부에는 문화재명, 수량, 거래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특기사항, 문화재 사진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년도의 거래내용을 기록한 문화재 매입(매도)대장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문화재 매매업자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검인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매매장부에 검인 도장을 날인하고 있으며, 검인을 받은 장부는 기재를 완료한 날부터 5년 안에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구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매매장부의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 비치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0.2.4(2011.2.5 시행)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 제78조(준수사항)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 처분내용(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이 삭제되었습니다.
- 동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2012년 이후) 법 개정시 보완토록 할 예정이며, 아울러 행정지도를 통하여 미검인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지자체 검인시기인 1~2월 사이 폐업을 하면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에 대한 검인을 안함. 이는 음성적 거래 후 폐업하여 검인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큼. 폐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인기간이 아니라도 거래내역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임.
- o 향후 시·군·구에서 매매업자가 폐업신청 시 검인기간과 관계없이 거래내역에 대한 검인을 받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도난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 예방을 위해 도입된 장부 검인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임병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 2. 지난해 천연기념물 죽음 전년 대비 6배 증가

- 1) 지난해 천연기념물의 죽음이 전년 대비 6배 증가했음에도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천연기념물의 죽음은 환경오염 등 생태계 교란 등에 의한 먹이부족, 황조롱이와 같이 도심에서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조류의 경우 건물충돌, 도로망 확장에 따른 로드킬 증가, 불법 밀렵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09년에 비해 '10년 천연기념물 죽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한 것은 이동성이 강하고 활동반경이 넓은 야생동물의 특성상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에, 우리 청은 이러한 천연기념물인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류의 건물 유리창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버드 세이버(Bird Saver)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둘째, 로드킬에 대한 대책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남 구례군 등 19개 지역을 선정하여 내비게이션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해 보호 안내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류보호협회・산양보호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먹이부족에 의한 조류 탈진 예방을 위한 겨울철새먹이주기 (매년 10여차례 실시) 및 동절기구조활동을 추진하고, 밀렵감시 및 불법 엽구 수거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청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훼손·멸실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조난된 동물을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천연기념물의 효과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 승 규 의원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 1.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1)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의 지난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문화재청은 집행률이 매년 저조한 이유로 문화재가 일반 건축물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문화재 방재시설에 관한 검토, 자문,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소실되거나 훼손된 문화재는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를 한다하더라도 통상 예방비용보다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률 제고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 하면서 방재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제약이 일반건축물에 비해 많고, 전기·통신· 소방·건축 등 복합공정으로 검토, 자문, 협의 등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른 대책으로 '10년부터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50% → 70%), 사전설계제도 도입 등으로 집행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방재자문위원 및 전문가 인력풀을 통한 신속한 기술자문을 통해 시공품질과 향상과 집행률 개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 최근 4년간 실집행률: '07년 16.9% / '08년 8.9% /'09년 56% /'10년 67.5%

### 심 재 철 의원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 1. 문화재청 비위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하여

- 행정안전부 정기 인사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행정안정부 처분요구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분상 조치와 함께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유념하여 보다 철저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소속직원 A의 '기소유예' 처분 통지 후 징계의결 없이 자체 처분(경고) 종결 건
    - 인사감사 지적 이후, 공무원 A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 개최 ('11.2.21) 등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조치('견책' 처분)를 하였으며, 징계의결요구 미이행 등 부적절하게 행정 조치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및 인사조치 하였습니다.
  - 성매매자 B에 대한 징계가 불문경고에 그쳤다는 지적 건
    - · 동 건은 2009년 10월경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것이 확인된 사안으로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위반 당시 지방에 근무하던 징계자가 신종플루 대책반의 일원으로 중앙 인플루엔자대책 본부로 지원근무 발령을 받고 가족과 떨어져 홀로 매일 심야까지 철야근무를 함으로써 격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과 위반행위 이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한 점이 감안되었으며,
    - 또한 동 직원이 2008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공적이 있어 '공무원징계 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징계감경 기준에 따라 '견책'을 '불문경고'로 경감하여 의결한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직원 C와 D의 관할 검찰청 및 경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통지에 대해 자체처분조차 이행하지 않은 건
    - '공소권 없음' 및 '기소중지' 처분통지의 경우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비록 해당 부처에 처분재량권이 있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자체 임의적 판단을 지양하고 양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철저한 판단하여 엄격히 비위사실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E의 기관장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보직 상태로 대기발령한 건
    - 대기발령으로 인사 감사에 지적된 직원들은 전원 시정조치하였고, 해당 징계자에 대해서도 2011.2.27일 보직을 부여하고 인사발령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 2. 발굴기관에 방치된 국가유물들 76,661점, 국가관리 강화해야
  - 1) 유물정리 및 미발간 보고서 완간 후 보관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귀속조치된 유물을 조속히 인계토록 하여 국가귀속문화재의 장기보유에 따른 훼손 및 도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우리 청은 국가귀속 총괄청으로서 보관관리관청인 국립중앙박물관이 민간 기관에 위탁한 유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미흡 등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 보완 토록 기 조치(2011.1.27)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발굴기관에 빠른 시일 내에 국가귀속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해당유물 보관관리관청인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하여 국가귀속 조치된 유물의 조속한 인수를 추진토록 하여 국가귀속 유물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2) 유물의 미인수로 인하여 조사기관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수장고 확장 등 장기적인 유물 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업무 협조를 통해 국가귀속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청은 국가귀속 총괄청으로서 보관관리관청인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하여 수장고 확장 등 장기적인 유물 인수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지방국립박물관과 연계하여 나주, 공주, 경주, 김해 지역에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권역별 수장고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발굴사실 공고 및 출토유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서를 제출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고 이행을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등 체계적인 협조를 통해 국가귀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유물관리규정 제정 및 관리 일원화 등을 통하여 체계적 유물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며 미귀속 유물 중 국가귀속 대상 유물은 조속히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토록 해야 함
  - 우리 청은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귀속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관하는 기관에 대하여 '유물관리 규정 제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귀속조치 후 보관관리기관이 인수하기까지 해당 유물을 보관하는 발굴조사기관에 대하여 '발굴조사기관 유물관리규정의 표준(안)'을 마련, 통보하여 자체 유물관리 규정을 제정토록 조치(2011.3.31)하였습니다.
- 국가귀속시부터 문화재를 등록・관리하여 출토문화재를 손쉽게 검색, 연구・활용할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굴조사기관, 보관・관리관청 및 위임・위탁기관을 포함한「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전산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 국가귀속 유물의 조속한 절차 이행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관관리관청인 국립중앙박물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 3. 문화재청, 교육 수강료 7천여만 원은 지출증거서류도 남기지 않아

- 「국가재정법」 세입·세출 분리 원칙에 따라 사업 추진시 발생한 수익은 세입조치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세출에 별도 편성·집행하여야 하나, 우리 청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한 교육비를 세입 조치 없이 해당 교육에 직접 집행한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 판단 오류와 관련 규정 미숙지에 따른 것입니다.
- 또한 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한 교육비를 직접 집행한 후 이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은 것은 운영지원과(16,862천원) 및 천연기념물과(29,908천원)는 잦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이사, 업무이관 등으로 인하여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일부 분실하였고,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26,101천원)은 업무담당자의 변경 및 업무소홀로 증빙자료를 분실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엄중 경고처분 하였으며, 향후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한 교육비는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외문화재팀
담 당 자	박정섭 사무관
연 락 처	042-481-3184

- 4. 국외문화재 환수 대부분(68.5%) 기증에 의존, 정부간 협상에 의한 환수는 23.7%에 불과
  - 1) 아직까지 문화재청이 불법부당 반출 문화재에 대한 규명과 환수대상 문화재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목록화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음. 속히 환수대상 문화재를 목록화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
  - 2010년부터 문화재 반출경로의 불법·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외문화재 출처조사」('10~'18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2015년에는 그간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의 가치성을 감안하여 "환수대상 목록"(Urgent List)을 작성할 계획이며 이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 5. 파주 반환미군기지(캠프 게리오웬) 환경오염 정화사업 중 고려~조선시대 유물발견! 공사 강행으로 문화재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 1) 성급한 판단으로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것
  - 파주 반환미군기지(캠프 게리오웬) 내 유적 발굴조사는 2009년 5월 발굴허가하여 2009년 6월부터 착수되었으며, 발굴조사 진행 중 2011년 5월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정밀발굴조사를 위해 발굴 변경허가(2011.6.23/2,403㎡) 후 현재 동 사업부지 내 모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2011.8.28)된 상태입니다.
  - 완료조치(2011.9.5) 시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고,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을 준수토록 통보하였으며,
  - 동 유적에 대한 모든 조사기록을 수록한 발굴조사보고서는 2년 이내(2013.9.27)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문화재청에서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각종 개발에 의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 6. 전국 항만, 공항 등 문화재 유출 적발방지 위한 감정위원 배치기준도 없이 부적절 배치, 감정수당 부당 수령 등 대책 필요
  - 1)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 감정실적 등을 반영하는 배치기준을 만들어 업무실적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적하신 대로 감정관실별 업무량, 감정분야, 감정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년도 말 감정위원 재채용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감정업무 소홀로 소중한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감정위원 전체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대책마련해야?
  - ㅇ 부정행위자 2인에 대해서 해임조치('11.3) 및 사기혐의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11.8.18)
  - 부정수령액(13명, 66,563천원)은 전액 환수조치('11.9.16)하였으며, 관련자들을 전원 주의 및 경고조치하였습니다.('11.8.17)
  - 복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비상근 감정관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11.3)하고, 17개 감정관실을 8개 권역으로 분류, '권역별 책임관'을 임명('11.7.11)하여, 권역별 상근 Post를 중심으로 인접 비상근감정관실 관리·감독하게 하는 등 복무체계를 시스템화하였습니다.
  - 감사원 지적 부당사례는 대부분 비상근 감정위원에게서 발생하였는 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비상근지역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7개 감정관실 중 비상근으로만 운영 중인 9개소(22명)→ 6개소(14명) 정규직 감정위원 배치 추진

# 안 경 률 의원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이재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2

#### 1. 궁능원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노력 필요!

- 1)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사유를 보면, 한국의 문화관광 및 사찰방문이 전체의 40% 이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궁능원 관광이 당초 방문 목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가 '느끼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변화 하고 있는데 대한 창의적 접근이 부족한 때문이 아닌지? 관광공사 및 관광회사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궁능원 관광자원화가 시급하며,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 등을 감안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 필요
- 한국관광공사, 문화재보호재단 등과 협의하여 외국인 관람객이 궁궐 및 왕릉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4대궁·종묘 만들기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의원님의 지적대로 보다 다양한 체험형 관광상품과 궁·능원의 연계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고 또한 관람 인프라 구축, 관람 콘텐츠 확충, 홍보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외국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람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 2. 부실한 문화재 해외반출 방지체계, 전면개선 시급!

- 1) 감정업무는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상근 감정위원 1인이 감정하고 2인이 감정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되었음.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 말고, 숨겨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체 감사 실시 등 철저한 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 이번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건은 복수감정의 형식을 맞추고자 외국에 나가있던 감정위원이 추후에 서명한 사례로 청장명의로 공식 엄중 '주의'조치하였습니다.

-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자체 감사직원을 현장에 보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는 등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비상근 감정관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11.3)하고, 17개 감정관실을 8개 권역으로 분류, '권역별 책임관'을 임명('11.7.11)하여, 권역별 상근 Post를 중심으로 인접 비상근감정관실을 관리·감독하게 하는 등 복무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 2) 지금부터라도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야 함은 물론 적어도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된 부실감정 반출 문화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조사를 통해 반출금지문화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청장의 견해는?
  -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감정품 사진 미보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모든 감정품에 대하여 사진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11.8.11)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는 전국 문화재감정관실에 감정한 모든 감정품 사진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등록관리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참고가 끝난 즉시 문화재청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3) 전문분야별 연계강화방안, 비전문분야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문화재감정관실 상근 감정위원의 경우 대부분 박사학위소지자 및 장기간 감정위 원근무자로서 전공분야 이외의 인접분야에 대해서도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실물 감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사 14명(56%), 석사 8명(32%), 10년 이상 9명, 20년 이상 4명
  - 또한 보완책으로 화상감정을 의무화하였으며, 비전문분야 전문성을 보다 제고시키기 위해 내부 감정위원용 교재를 발간·배포('11.9)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년 말 감정위원 재 채용 시 감정분야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충원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4) 2008년 비상근 감정관실 부실운영 문제가 지적된 바 있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문제와 더불어 공직기강의 문제라고 생각됨.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힐 것
-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하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비상근 감정관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였으며, 8개 권역별 책임관을 임명('11.7.11)하여 인접 비상근 감정관실의 복무관리 및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5) 비상근 감정위원은 출근 시에만 수당(10~11만원)을 지급하게 되므로 인력풀을 여유있게 위촉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청장의 견해는?

-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화재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관계 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
  -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사람
- 이에 전국대학교, 박물관 등 유관기관을 통하여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인력풀을 마련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660

#### 3.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소속기관 연구용역 71%가 수의계약

- 1) 최소한의 입찰조건만을 넣어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청장의 의견은?
- 문화재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요구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다보니 수의계약(2회유찰:12건, 특정인의 기술:7건, 5천만원이하:7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청은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상에 규정된 5천만원 이내의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더욱 강화하여 2천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2009.01.05)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수의계약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가급적 경쟁입찰 계약방법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국가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 부 겸 의원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1

#### 1. 중국의 문화공정 야욕, 아리랑 빼앗기나

- 중국의 국가급 대표목록 중 조선족 관련 문화유산은 총 16종목입니다. 당초 12종목으로 보고한 것은 조선족과 타 소수민족 공동 등재종목 4종목을 제외한 자료였음을 말씀 드리며, 전체 목록 1,219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16종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중국의 대표목록 제도 도입 및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움직임은 이미 2007년 경 인지 하고 있었으며, 실제 2009년, 2010년 두차례 중국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제도내용과 조선족 문화유산 목록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 ※ 국외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연구(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발간)
-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 대응속도를 높여 관련 제도를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급 대표목록 50종목 선정 추진 중
    - : 올해 중국이 이미 공표한 조선족 관련 종목, 향후 추가가 예상되는 종목 및 우리나라 명절놀이, 생활민속, 의식주 무형유산 중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50 종목을 대표목록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매년 온라인 전수조사, 제2차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표목록을 추가 선정해 나갈 예정임
  - 온라인 전수조사(2010~2012), 제2차 무형문화유산 전국종합조사 실시(2011~2020)
    - : 중국 성·자치구급 대표목록, 국가급 대표목록과 같이 유네스코 협약의 기준에 따른 국가목록과 긴급보호목록을 작성·선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임
  -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개정 추진
    - : 반드시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을 해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보유자 없는 종목을 지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위함
  -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 궁극적으로 무형유산의 범위를 넓히고, 보전원칙을 재정립하며, 공예분야의 전승 취약점 해소를 위한 대학교육과 연계한 전승시스템 마련, 지식재산권과 전승 활성화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 등의 목적을 위해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기초자료 수집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올 연말까지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절차 진행예정
  -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중
    - :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센터 및 무형문화유산국 설치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무형 문화유산 자원조사, 진흥정책 집행, 교육·아카이브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전북 전주에 구축중(2013년 개관 예정)이며, 관련 직제신설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임

- '아리랑'은 2009년에 정선아리랑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신청한 바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정선아리랑 이외에 경기, 진도, 밀양 등 우리나라 아리랑을 모두 묶어서 2012.3월에 수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협의 채널도 다각도로 마련하여 공동 등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계획입니다.
- 우리 청은 앞서 말씀드린 관련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관련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 : 중국 조선족 관련 대표목록 현황 1부.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4

- 2. 명동성당 구 주교관, 문화재보다 더 가치 있는 비지정 문화재
  - 1) 1977년 2월 26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명동성당 본당과 구 주교관을 국가사적으로 의결하였으나 1977년 11월 22일 관보에서 구 주교관이 누락된 이유를 문화재청에 문의하니 당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지정 하기로 의결된 문화재가 실제 지정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는가?
  - ㅇ 현재까지 구 주교관 이외에는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 2) 구 주교관은 건축 허가된 명동성당 재개발사업 사업내용에 다목적홀로 사용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어, 향후 재개발 과정에서 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사적 지정하여 보존대책을 세운 다음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임. 문화재청은 시민들이 보낸 명동성당 구 주교관의 문화재 지정 신청에 대한 회신(2011.7)에서, 명동성당 구 주교관의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그 필요성을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냈음. 문화재청장은 구 주교관의 사적으로써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적 지정을 추진할 것인지?

- 구 주교관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기존 대수선 신청했던 안을 철회하고 그대로 보존하는 현상유지로 변경 신청되어,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건축허가('11.4.12) 되었습니다.
- 구 주교관의 사적 추가 지정 여부는 천주교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 <붙임>

###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중 조선족 관련 유산(16종목)

목 록	신청지역	비고
1. 농악무(朝鲜族 象帽舞, 乞粒舞)	延邊州, 本溪市	'06.05.20 지정 (1기),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2. 널뛰기/그네타기(朝鲜族 跳板, 秋千)	延邊州	'06.05.20 지정 (1기)
3. 퉁소음악(朝鮮族 洞簫音樂)	延吉市	'08.06.07 지정 (2기)
4. 학춤(朝鲜族 鹤舞)	延邊州	"
5. 장고춤(朝鲜族 長鼓舞)	圖們市	n
6. 삼노인 공연극(朝鲜族 三老人)	和龍市	n
7. 민족악기제작(朝鲜族 民族樂器制作技藝) - 조선족 등 5개 소수민족의 민족악기제작 기술	延邊州 등	"
8. 환갑잔치(朝鲜族 花甲礼)	丹東市,延邊州	"
9. 전통혼례(朝鲜族 傳統婚禮)	延邊州	"
10. 전통복장(朝鲜族 服飾)	延邊州	"
11. 아리랑(阿里郞)	延邊州	'11.05.23 지정 (3기)
12. 가야금예술(伽耶琴艺术)	延吉市	n
13. 판소리(盘索里)	鐵嶺市, 延邊州	n
14. 회혼례(朝鲜族回婚礼) - 조선족회혼례(朝鲜族回婚礼) 포함 7개 소수민족의 혼속(婚俗)	延邊州 등	n
15. 씨름(摔跤) - 조선족씨름(朝鲜族摔跤) 등 3개 소수민족의 씨름	延吉市 등	"
16. 중추절(中秋节) - 추석(秋夕) 등 3개 소수민족의 중추절 풍속	延邊州 등	"

※ 15, 16번 : 기존 국가급 무형유산 목록에 조선족 공동체를 추가함(擴展항목)

## 김 재 윤 의원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 1. 문화재청. 상부의 공식요청 없이 만월대 발굴 중단

- 1)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문화적·인도적 교류는 지속되어야하며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됨에도 단지 5·24조치에 따라 발굴조사를 중단한 것은 북한 내 우리 문화재 실태 및 보존이마스터플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라 생각함. 남북간의 정치적인 경색과 무관하게 큰 틀에서 북한 내 우리문화재 실태와 보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는 남북한 문화재의 공동조사 및 학술교류 확대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과 고려 왕궁유적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역사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대할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 5월(5.18. 발굴조사 완료)까지 4차에 걸쳐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2010년 5월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2011년 올해 제5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11.7.6. 통일부에서 개최한 '역사자료남북협력 추진협의회'에서 남북간 문화재 교류 사업의지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적극 요청한 바 있으며,
- 또한, 당시 문화재청장(최광식 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도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과 북한 고구려벽화고분 조사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우리 청은 올해 제5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단체와 함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 9.28(수) 관계기관 사전회의 개최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연석회의
-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간 남북문화재 교류에서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 남북문화재 교류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와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노명구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686

- 2. 우리도 반환해야 할 외국의 귀중한 문화재가 있다!
  - 1)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타니 컬렉션 유물을 돌려 달라고 할 때에 대비한 문화재청의 대응방안은?
  -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타니 컬렉션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사업가인 오타니로부터 유물을 구입하여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기증, 광복 이후 국립중앙 박물관으로 넘겨져 소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o 따라서 동 유물은 불법적으로 강압에 의하여 반입된 유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반입된 유물임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 o 도난 또는 불법으로 반입된 문화재는 출처국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입수된 문화재는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학생과
담 당 자	김용구/류시영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7120

- 3.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전문가 양성기관인 전통문화대학교 출신, 문화재청에는 고작 2명
  - 1) 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 졸업생을 문화재 행정현장에 투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국가 인력 운용의 관점을 봤을 때,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습니까?
  - 의원님의 지적처럼 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졸업생이 문화재 행정현장에 투입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문화재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특정과제의 공동 연구 등 교육·연구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학생들과 교수진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기관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 지를 파악하고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대학특성화에 대한 학생·교수 및 문화재 수리·보수 업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특성화 방안 연구"('11.4~12월) 용역으로 도출된 사회적 인재 요구상에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단순한 커리큘럼 특성화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실험실습 시설확충 및 교원 추가 확보 등 실질적 교육프로그램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창 수 의원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용휘/류재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92/4788

- 1. 고발은 지자체한테 떠넘기고. 후속조치는 나 몰라라.
  - 1) 작년 국정감사때 지적받은 왕흥사지 등 문화재 훼손에 대한 고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현상변경 허가 전 사업시행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10.10.8~10.25) 후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해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하였습니다.('10.11.12/ 피고발인 : ○○건설 대표 허○○) ※ 대전지검 논산지청 처분결과['11.4.28/ 무혐의(증거불충분)]
  - 2)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감에서 지적하면 고발하겠다 해놓고, 증거도 없이 고발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종결하면 그만입니까?
    - 2010년 문화재청 국정감사('10.10.5)시 민주당 장병완 의원님이 제시한 사진으로 왕흥사지 등 문화재 훼손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실관계 확인시점에 2010 세계대백제전 행사('10.9.18-10.17)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증거자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여서, 부득이 장병완 의원님이 제시하신 사진자료를 첨부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불기소 처분이 떨어졌으면 왜 그 처분이 나왔는지 사유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건 받으셨습니까? 부여군청이 고발했기 때문에 관할 관청인 문화재청은 후속조치는 나몰라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받았으며('11.4.28) 처분 결과에 대한 사유서는 별도자료와 같이 제출합니다.
  - 향후에는 우리 청 규제법무감사팀과 협의하여 고발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 문화재 훼손은 후손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관할관청인 문화재청이 이러한 죄에 엄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문화재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 건을 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허술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문화재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은 각 사안별로 문화재청 관련부서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ㅇ 향후 주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수행하겠습니다.
- 참고로, 현재 파악된 최근 3년간의 문화재 관련법 위반 고발현황은 별도 자료를 참 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정남/곽창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1, 4882

#### 2. 외암 민속마을 고택 경매, 문제점은 없는가?

- 1) 2009년 현충사 이충무공 고택이 경매에 나와 충격을 준 이후 금년 6월 아산 민속마을의 상징적 건물인 '건재고택'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매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감찰택'은 2009년부터 사랑방 증축을 위해 공사 중인데 불법적인 원형변경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외암마을이 지난 3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등록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앞서 말한 상황들이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는 없는 것인가요?
- 아 '아산 건재고택'경매 관련 건은 사인간의 채무관계에 의한 소유권 변동사항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ㅇ '감찰댁' 현상변경과 관련하여
  - 소유주 김ㅇㅇ가 소실된 사랑채, 부속채, 대문채 복원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 ('06.6.7)과 문화재청의 허가('08.12.22)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 현재 외암마을 내에 있는 주요 양반가옥들은 대부분 사랑채 및 문간채 등의 부속 건물들이 남아 양반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나 감찰댁은 안채를 제외한 사랑채 등 부속건물이 소실되었으며, 이를 복원하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문화재 위원회 심의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허가된 사항으로 세계문화유산등록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 '감찰댁'의 경우, 지난 2007년에 소유 은행측이 사랑방 증축을 위한 증거를 찾으려 간이발굴을 했다가 결국 못찾았는데, 2008년 말에 증축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존에 고증자료가 없어 부결되었던 것에 대하여 사업신청자가 감찰댁의 안채규모 및 마을주민들의 전언을 토대로 외암마을 내의 다른 가옥들과의 비교를 통해 사랑채의 규모와 위치 등을 추정하여 당초 안을 수정・변경 재신청한 것을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비교검토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민속마을로서의 품격이 유지되도록 진행된 사항입니다.
- 참고로, 문화재 복원은 고증자료를 근거로 복원하는 방법과 전문가의 학술적 검토, 지역주민들의 증언 및 주변 가옥의 배치 형태·양식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3) 위와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이러한 고택 등을 국가가 나서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요민속문화재인 고택에 대해 국가에서 직접 매입·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가능하다면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엄청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ㅇ '아산 외암마을' 관련
  - '아산 건재고택' 등은 사인간의 거래문제, 긴급매입 예산 미확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지속적인 매입 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매입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아울러, 민속마을 내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상 마을보존회에서 소유·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경매진행 과정 중 소유자(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상의 문제 발생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아산시, 마을 보존회 등을 관리단체로 지정·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담 당 자	김용구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 3. 아직 특성화 안된 문화유산 특성화 대학

- 1) 2000년 한국전통문화학교가 개교 당시, 이론과 실기를 겸한 전통 문화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천년을 이끌어갈 전통문화 전문 인력 양성, 동북아 문화중심 대학으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러한 학교운영 정책이 퇴색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 특성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문화분야 특수목적대학으로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역할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특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 중('11. 4~12월)에 있습니다.
- 문화유산분야 명문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 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하여 특성화 재원 확보 및 전담인력 확보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오니, 의원님의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_	62	_
---	----	---

_	63	_
---	----	---

_	64	_
---	----	---

# 이 병 석 의원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 1. 문화재 보호는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
  - 조직·인력 확충 통한 예방대책 시급 -
  - 1) 문화재청 소속으로 전국의 도난·도굴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2명뿐이고, 도난방지설비 구축률, 도난문화재 유통과정, 시장규모, 국외밀반출 현황 등에 대해 문화재청은 아무런 실태 파악도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예산집행내역을 보더라도 매년 5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배정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는 그 금액마저 줄어들고 있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도대체 문화재청이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청장의 견해는?
  - 우리 청은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 강화를 통하여 사범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에도 문화재전담수사반이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 ('06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07년) 대전 지방경찰청, ('08년) 해양경찰청
  - 아울러 도난된 문화재의 불법유통 방지, 국외유출 예방, 범인 검거를 위해 도난문화재 정보를 경찰, 박물관, 지자체, 전국 세관, 문화재감정관실, 매매업자 등 유관기관에 전파 하는 한편, 매매업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불법유통방지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재 불법유통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범죄는 비밀유통망을 갖추고 날로 전문화·대형화·조직화되며, 범죄의 용의점이 발견되더라도 증거확보 및 공소유지를 어렵게 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어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부족한 인력으로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최소 계단위의 사범단속 조직의 질적·양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인력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159개소에 도난방지시설을 설치('89~'11년)하였으며, 사찰, 서원·향교 등 비지정문화재소장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조속 추진하여 실태파악 결과를 분석,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유형문화재과/정보화기획팀
담 당 자	박용기사무관/노명구연구관/오성환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4686/4755

- 2)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 및 회수현황을 보면,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지정문화재에 비해 도난 건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정 문화재의 회수율은 10%인데 비해, 비지정문화재는 0.2%로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음. 이런 현실은 그 동안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 문화재 도난사건은 수사 중에 피해자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과거 도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난시기와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사건 접수하여 향후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년도 도난문화재를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도난 접수년도의 회수율로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회수율 통계가 낮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통계상에는 최근 도난실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 지정문화재는 기본 자료(사진 등)가 있어 증거 확보에 용이하여 회수율을 높일 수 있으나, 비지정문화재는 기본 자료가 부족하고 개인 소장 등을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개인소장 비지정 동산문화재는 수량이 매우 많아 소장 현황 및 수량 파악이 어려워 일일이 국가에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다만, 사찰·문중·향교 등 문화재 다량 소장처를 중심으로 조사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비지정 문화재는 개인 및 사찰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임을 감안하여 사유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교 문화재 일제조사('02~), 개인소장 동산 문화재 조사('04~)사업 등을 추진하여 목록작성 등 DB구축화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청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비롯한 비지정문화재의 도난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찰·문중에 전시관 건립을 지원(완공 36, 추진중 14)하고 있으며,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에 대한 훈증소득을 실시(90~'10년 : 218개소)하여 곰팡이 등 미생물에 의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산 문화재 보존관리의 취약계층인 개인, 사찰, 문중 등 소장자를 대상으로 매년 동산문화재 보존교육을 실시('04년~'11년 교육인원:533명)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정보화기획팀
담 당 자	노명구 연구관/오성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86/4755

- 3) DB구축 사업 내역을 보면 비지정 문화재 중 불교문화재에 대해서는 DB구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책자나 파일로 보관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도난을 방지하거나 도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DB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예산과 인원을 충원하여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현재 비지정문화재 중 개인소장 문화재조사 결과 66,459건에 대한 DB를 구축 하였으며, 향후 정보화 예산 증액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비지정문화재(사찰문화재, 개인소장 문화재) DB구축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